

국가 중립성 논의와 정교분리*

Debates on State Neutrality an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서윤발 (Yoonbal Seo)**

ABSTRACT

The debate on state neutrality, which bega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began with Rawls's contention that the state should be neutral to religious and moral ideas. Subsequently, criticism has been raised by Sandel and other Communitarianists. However, there is one common interest in their conflicting arguments about state neutrality.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ights. Rawls argues for state neutrality based on the position that individual rights to freedom of religion and thought cannot be violated. On the other hand, Sandel opposes state neutrality based on the position that such individual rights should be limited by the community. However, the discussion on state neutrality according to individual rights has already been implied i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s stipulated in the U.S.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I think that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should not be interpreted simply as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I think i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ense of state neutrality. In this paper, I will attempt to reveal how the issue of individual rights is central to this series of discussions.

Key words : State Neutrality, Individual Right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Constitution, Liberty of Belief.

* 2021년 5월 11일 접수, 6월 15일 최종수정, 6월 15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S1A5B5A07109658).

**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ity) 외래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lampos@naver.com

I. 글을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 특히 보수적 교회들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구원과 신앙 성장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에는 대응하지 않고 지내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목회자 개인 으로나 교회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더 나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인들과 연대하여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행보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보수 교회들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모습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변화에 직면하여 정교분리의 원칙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목회자나 교회가 정치적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구만 일부 수정 되었을 뿐, 제정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되었던 항목이다. 그러나 헌법의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간혹 이 조항이 ‘정부는 교회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정부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해석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만일 교회가 현행법을 위반한다면 교회라 할지라도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회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목회자 개인이나 교회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에 의해 보장받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란 어떤 특정한 집단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교분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과거 유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종교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종교계의 결정 역시 정부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단일한 종교를 국교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정교일체로 인하여 큰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분리 원칙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교분리라는 의미가 단순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의 신앙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수정헌법이 채택되는 역사적 과정은 수정헌법 제 1조의 의도가 이러한 의미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의 이런 측면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제기된 국가 중립성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국가 중립성 논의는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로 이어진 국가 중립성 논쟁은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가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된다. 롤즈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특정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는 입장인 반면에 샌델(Michael J. Sandel)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중립성 논의는 첨예하게 대립 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립성 논의가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만 해석한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제 한국 사회도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미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교분리의 의미는 미국의 수정헌법이 규정되던 상황과 같이 개인의 신앙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롤즈와 샌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 종교개혁가들의 정교분리 사상, 그리고 미국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권리 문제가 이런 일련의 논의들에서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밝히려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중립성 주장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

1. 롤즈의 중립성 논의

20세기에 시작된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롤즈의 『정의론』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의론』은 본래 국가 중립성을 주장할 목적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하지만 롤즈를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는 롤즈의 정의론에 제시된 내용들 중 일부를 국가 중립성과 관련하여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은 마이클 샌델이라 할 수 있다. 샌델은 주로 롤즈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롤즈 이론을 비판했지만, 롤즈의 중립성 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비판했다. 이후에 롤즈는 샌델이 비판한 인간관의 내용들이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국가 중립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그런 중립성 주장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중립성의 유형을 더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제 이 장에서는 롤즈의 이론을 살펴보다 중립성과 관련되어 비판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롤즈가 『정의론』에서 가장 역점을 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basic structure of society)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John Rawls, 1971, p. 10.). 여기서 ‘사회적 기본 구조’란 “주요한 사회 제도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

익의 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그 자신이 해석한다(John Rawls, 1971, p. 6). 이런 설명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 구조는 어떤 기구나 조직, 또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런 조직과 제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더 근본적인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설정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롤즈는 이런 가장 근본적 원칙으로서의 정의의 원칙들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제 1 원칙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2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John Rawls, 1971, p. 53.)”. 롤즈는 이렇게 제시된 정의의 두 원칙이란 자신이 자의적으로 만든 원칙이 아니라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원초적 입장이란 정의의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합의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사회 계약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J. J. Rousseau, 1967, pp. 12-13.). 하지만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과 일반적인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사회 계약과는 다른 점이 있다.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계약은 단지 그런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가정하는 것이라면,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은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원초적 상황이 공정한 상황으로 조성되도록 필요한 장치들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런 장치들 중 핵심적인 것이 곧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상적 사고 장치이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지의 장막 안에 있는 합의의 대표자들은 자신에 대한 특정한 정보에 대해 무지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지의 장막을 통해 차단하는 특정한 정보는 두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관념들인데, 여기에는 기존의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신념들이 속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우연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인종, 부의 정도, 천부적 재능 등을 말한다(John Rawls, 1971, p. 16). 롤즈는 이렇게 무지의 장막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 원초적 계약 상황이 누구에게도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상황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John Rawls, 1975, pp. 540-542.). 그리고 그런 공정한 상황에서 합리적 대표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곧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두원칙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간략하게 살펴본 롤즈의 이런 이론 가운데서 국가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은 원초적 합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장막에 의해 자신의 정보를 차단당할 때, 그 차단당하는 정보 중에는 선에 대한 관념도 포함된

다는 내용이다. 롤즈가 원초적 상황에서 선의 관념까지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야 한다고 설정한 것은, 만일 원초적 상황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 자신의 선 관념을 알고 있다면 그 대표자들이 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들을 선택할 때, 자신들의 선 관념을 추구하기에 더 유리한 원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선 관념을 가진 이들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도 않은,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지의 장막을 설정한 것이었다. 롤즈의 이런 방법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할 원칙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선 관념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런 시도에는 롤즈 자신의 선 관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롤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선 관념들을 합리성의 관념이라고 여기며, 그런 관념들은 사람들마다 동일하지 않고 다양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선 관념을 더 낫거나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의 기본 원칙들도 특정 선 관념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John Rawls, 1971, p. 392.). 물론 이런 『정의론』의 주장 가운데서 롤즈가 중립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를 운영하게 될 가장 기본적 원칙이 특정 선 관념에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국가 중립성 주장의 한 가지 유형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후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는 ‘국가가 특정한 선 관념을 추구하게 하거나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중립성, 즉 목적의 중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힌다(John Rawls, 1998, p. 193.).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립성에 관한 이런 생각은 『정의론』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 이론을 고안할 때, 현대 미국 사회가 다양한 종교관과 도덕관이 공존하는 다원적 사회라는 점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런 다원적 상황에서 만일 어떤 특정한 종교의 교리나 도덕적 교설에 더 유리하게 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종교나 도덕적 교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는 다원적 상황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원했던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국가 중립성 주장은 롤즈의 『정의론』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 Mulhall, and A. Swift, 1996, pp. 63-65.). 그래서 킴릭카(Will Kimlicka)는 아예 롤즈가 자신의 정의 이론을 ‘좋은데 대한 옳음의 우선성’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Will Kimlicka, 1988, p.p. 173-190.).

2. 롤즈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들

『정의론』이 발간된 후에 롤즈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그런 비판들 중에는 당연히 중립성에 대한 비판들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비판들 중에서 롤즈가 의미있게 받아들인 것은 1973년에 발표된 네이글(Thomas Nagel)의 논문이었다. 네이글은 이 논문에서 롤즈의 중립성이 사실은 중립적이 아

나라 개인주의적인 선 관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즉,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 참여한 대표자들이 선에 대해 중립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한다고 하지만 롤즈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 선’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이며, 특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선 관념이라는 것이다(Thomas Nagel, 1973, p. 227). 이런 네이글의 비판에 대해 롤즈는 “Fairness to Goodness”라는 논문을 통해 반박했는데, 여기서 롤즈는 자신이 전제하고 있는 중립성이라는 것이 결코 도덕적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 선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즉, 무지의 베일을 통해 어떤 특정한 선 관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이 어떤 선 관념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특정한 선 관념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기본적인 선들(the primary goods)에 대한 욕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John Rawls, 1975, p. 536). 롤즈는 이 기본적인 선들에 대해 “합리적인 인간이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라 한다(John Rawls, 1971, p. 79).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목적이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그 목적을 추구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선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선들로는 권리, 자유, 기회, 수입과 부가 포함되며 또한 자존감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포함된다고 한다(John Rawls, 1971, p. 348). 롤즈는 정의의 원칙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 선에 대한 관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선들은 원초적 입장에 참여한 합의 당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John Rawls, 1971, p. 348). 즉, 정의의 원칙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다른 정보들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더 많은 기본 선들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 선은 최소 수혜자 집단을 선정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롤즈는 이 기본 선이라는 관념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기본 선의 관념들 중 하나인 ‘부(wealth)’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본 선의 관념들이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즉, ‘부’란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환 가능한 수단에 대한 (법적) 통제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이것이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부를 획득 하고자 하는 욕구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소득과 부는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단체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소득과 부에 대한 욕구와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John Rawls, 1975, pp. 540-542). 또한 롤즈는 네이글이 기본 선들 중 강한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지적한 상호 무관심과 시기심 역시 오히려 부의 분배에 있어서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초적 입장의 상황을 개인주의적이라 비판할 수 없다고 반박 한다(John Rawls, 1975, pp. 540-542).

하지만 롤즈 이론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고, 롤즈의 중립성 주장도 그런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은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중 샌델의 비판을 살펴보면, 샌델은 롤즈로 대변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특징을 롤즈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좋은보다 옳음이 우선 한다’는 생각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특징은 두 가지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특정한 개인의 권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복지도 그 권리들을 무효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의의 원칙들은 특정한 선관념에도 의거하지 않고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Michael J. Sandel, 1982, p. 2). 샌델은 이런 의무론적 자유주의의에 함축된 이 두 가지 주장들 중, 두 번째 주장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비판한다. 샌델에 의하면 이 두 번째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론이라고 한다. 즉,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하기 위해 특정한 인간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그 근거로 롤즈의 이론 중에서 원초적 입장에 관한 이론, 특히 무지의 베일에 대한 내용을 거론한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상황에서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샌델은 이렇게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의 상태란 롤즈와 자유주의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그것은 인간 주체가 어떤 가치와 목적에도 앞서서 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 한다(Michael J. Sandel, 1982, pp. 21-23). 인간 주체가 가치와 목적에 앞서 구성된다는 말은 주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가족이나 민족, 문화, 또는 종교적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일 수 있으며, 그런 주체가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Michael J. Sandel, 2010, pp. 220-221.). 샌델은 바로 이런 유형의 인간을 가리켜서 어떤 공동체와도 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무연고적 자아라고 명명한다(Michael J. Sandel, 2005, pp. 220-226). 샌델은 롤즈 뿐만 아니라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는 모두 이런 유형의 인간관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Michael J. Sandel, 1982, p. 15). 그리고 이런 인간관을 전제할 때, 공동체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극단적 형태의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연대감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 한다. 또한 개별적 주체에 의해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의 상대화를 통해 사회의 탈도덕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도 주장 한다(Michael J. Sandel, 1996, p. 16). 무연고적 자아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국가중립성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선에 대한 관념에 근거하지 않고 옳음의 원리를 도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논의에서 선의 관념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가 중립성의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샌델은 무연고적 자아관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이 결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아는 공동체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관념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 관념은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연대감을 만들고 이런 연대감은 다시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공공체의 선 관념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논의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이다(Michael J. Sandel, 1996, p. 332.). 즉, 공동체는 공동선의 관념에 기반한 자치를 통해 자아를 완성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Michael J. Sandel, 1996, p. 276.).

3. 중립성에 대한 논의와 개인의 권리

롤즈를 비롯한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샌델의 비판에 대해서 롤즈는 자신이 이러한 유형의 인간관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사실 공동체의 선 관념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무연고적 자아란 존재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홀로 무인도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공동체에 속하고,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선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자라나면서 또 다른 선 관념들에 접하여 스스로 자신의 선 관념을 비교하고 변경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샌델의 비판이나 롤즈의 반박이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으려 한다. 여기서는 중립성에 대한 롤즈의 입장과 샌델의 비판이 서로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장이 한 가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체가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은 공동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동 선을 바탕으로 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런 연대감을 기반으로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는 공동선에 의하여 개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에 롤즈를 비롯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샌델도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주장에 함축된 두 가지 특징들 중 한 가지는 특정한 개인의 권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복지도 그 권리들을 무효화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모든 논의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롤즈의 경우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중립성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했는데,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 롤즈의 권리 중심적 논의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롤즈는 자신이 추구하는 중립성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한다. 첫째, 중립적 입장이 단지 사회의 주요한 기본 제도에만 적용될 뿐이지 세세한 도덕적 논의에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구체적 도덕적 논의에 개인의 신앙이나 도덕관념을 근거로 공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샌델이 비판한 것처럼 어떤 선 관념에도 근거하지 않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어떤 특정한 포괄적 교설과 같은 선 관념에는 근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 선 관념들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중립성의 유형을 목적의 중립성(neutrality of aim)이라고 밝힌다. 목적의 중립성이란 국가가 어떤 특정한 포괄적 교설들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려 하거나 장

려하려 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지원을 해어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J. Rawls, 1993, pp. 192-193). 롤즈가 이렇게 목적의 중립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만일 국가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가치만을 중요시 한다거나 후원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롤즈의 중립성 논의는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롤즈의 중립성 논의는 개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샌델이 롤즈의 중립성을 비판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공동체가 개인의 권리를 제어할 수 있음을 논증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수정헌법에 포함시킨 의도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정헌법에 포함시킨 의도 역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초기 식민지 정착 시기에 각 주마다 거주민들의 종교를 공식적 종교로 지정하였다가 이후에 연방정부의 헌법이 제정될 때는 국교설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초기 식민지 정착 시기에 각 공동체들이 공식적 종교를 지정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종교와 도덕적 관념이 그 공동체의 법과 제도의 근거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종교와 도덕적 관념에 유리하게 법과 제도가 설립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합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에는 공동체들마다 추구하는 종교와 도덕적 관념이 상이했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의 종교나 도덕적 관념을 공식적인 것으로 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과거 영국이 그랬듯이 종교 박해나 차별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교분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6-17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와 같이 종교와 자유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개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정교분리라는 원칙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종교개혁기의 정교분리 사상과 미국 헌법에서의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I. 정교 분리에 대한 논의

1. 루터의 이론에 내포된 정교분리 원칙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루터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두 왕국론’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루터가 말하는 두 왕국은 권력의 주체에 따라 가장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왕국론을 ‘두 통치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루터의 저술에는 두 왕국론이라는 이론적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두 왕

국'이란 표현과 '두 통치'라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된다(Brent W. Sockness, 1992, pp. 93, 96).

루터의 두 왕국론을 간략하게 진술한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국이 존재하며, 그 두 왕국은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한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왕국이란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며, 또 하나는 세상의 왕국을 말한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통치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세상 왕국은 세상 정부가 통치의 주체가 되며, 이런 세상 정부의 통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구분 없이 그 정부에 속한 모든 사람이 포함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직 세상 왕국에만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Martin Luther, 1961, pp. 373-374). 바꾸어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세상 정부에만 복종하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도 복종해야 한다. 물론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정부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경우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타인을 위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정부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루터의 두 왕국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부에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의 교의적 주장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이 이론은 정교분리라는 정치철학적 원리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세상의 물리적 장소를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 왕국으로 해석한다면, 루터의 두 왕국론은 단지 기독교의 교의적 주장으로만 한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조직체를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교회와 세상 정부의 관계를 설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 자체가 교회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Kenneth Hagen, 1998, p. 103). 그러나 루터가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만이 그 영혼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그 백성들을 교육하는 행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Martin Luther, 1961, p. 38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 자체가 지상의 교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이 세상에서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의 관계는 곧 교회와 세상 정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하고, 세상 정부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

지 세상 법과 강제력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루터의 두 왕국론에 의하면 교회와 정부라는 두 조직체는 그 목적과 역할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지만, 서로 대립하는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각각의 왕국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로의 영역을 지키고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Martin Luther, 1961, p. 368). 루터는 이렇게 두 기관의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세상 정부 간에 발생해 왔던 갈등들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루터가 두 왕국론을 통해 제시한 정교분리 원칙은 근대 이후에 제기되었던 정교분리 원칙과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 첫째는 정부의 일과 교회의 일이 철저히 구분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루터의 저술 중 한 가지인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에게』라는 글에서 제후들이 세속 권력을 이용해 교회를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후견 기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정부가 여전히 교회의 일에 어떤 면으로든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루터가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박홍식, 2017, p. 189). 실제로 루터는 그가 작센에 머물던 동안에 교회의 일들, 특히 기독교의 정통 교리문제에 대해서까지 세상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던 경우들이 있었다(박홍식, 2017, pp. 389-390). 물론 루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속 정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종훈, 2002, p. 23). 루터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교회가 하지만, 그 판단에 따라 어떤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에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으로 제정해가는 과정에서 교회와 정부의 이런 관계는 더 엄격하게 구분되고, 또 분리되어 진다. 둘째로 루터의 정교분리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나 그런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루터는 정교분리 원칙을 제시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두 영역 간의 갈등을 없애기 원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통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루터 당시에는 개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1555년 아우스쿠르크 평화조약에서 종교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긴 했지만, 그것은 제국 내 군주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 개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개인들은 군주가 선택한 종교를 따라가야만 했다(박홍식, 2017, p. 218).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 볼 수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이러한 특징들은 칼빈의 이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 칼빈의 이론에 내포된 정교분리 원칙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가지 부류의 정부에 대해 언급한다. 한 가지는 영적인 정부(spiritual government)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시민 정부(civil government)

이다. 이 중에서 영적 정부는 양심의 경건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민 정부는 시민 개개인이 행해야 하는 의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John Calvin, 1960, p. III. xix. 15.).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영적 정부가 교회를 의미하고 루터가 말하던 하나님의 왕국 역시 교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칼빈의 주장은 루터의 두 왕국론, 또는 두 통치론과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시민 정부란 루터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만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시민 정부는 본래부터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시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루터는 세상 왕국의 목적을 외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정 했지만 칼빈은 시민 정부의 목적이 세상의 외면적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외면적인 예배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상태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John Calvin, 1960, p. IV. xx. 2.). 이것은 치안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행해질 수 있는 우상숭배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진리에 대한 훼방까지 시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런 칼빈의 두 정부론 역시 루터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정부와 시민 정부를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구분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정교분리의 원칙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중세기의 교회가 정부의 일에 개입되어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가가 교회의 일에 개입될 경우, 교회는 본질적인 측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가 그랬듯이 칼빈 역시 시민 정부가 교회의 일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전혀 무관한 조직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칼빈은 시민 정부의 목적이 교회를 도와서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고무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점은 루터의 이론과 비교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John T. McNeil, 1986, p. 285.). 즉, 칼빈의 두 정부론은 한편으로는 정교분리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세상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런 칼빈의 생각은 제네바에서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칼빈은 비록 제네바에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네바의 법과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면에서 칼빈이 제네바에 있을 때, 일종의 신정정치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기련, 2008, pp. 66-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두 정부론이 정교분리 원칙을 함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칼빈의 두 정부론 역시 근대 이후의 정교분리 원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들이 있다. 첫째, 칼빈은 국가와 교회를 구분하긴 했지만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일 뿐이고 실제로는 동일한 신앙 체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앙공동체를 원했다는 점이다. 칼빈은 자신이 머물던 제네바가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결별하고 독립된 교리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법과 정치체제까지도 동일한 신앙의 체계에 따라서 구성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영국이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 성공회를 국교로 설립하여 정부가 국교회를 후원

했던 것처럼 칼빈 역시 제네바의 교회들을 제네바 정부가 후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칼빈의 정교분리 사상은 국가가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특정 업무에만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칼빈의 정교분리 사상 역시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리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의 두 정부론은 이후 세대의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관용의 사상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칼빈은 제네바의 종교를 특정 종교로 확정하고, 정부는 그 특정 종교를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의 이런 생각은 다른 교리적 체계에 대해서는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 대표적 실례로 칼빈이 제네바에서 재세례파의 교리적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세속 정부는 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두 정부론은 분명 정교분리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일정 부분의 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개인의 신앙과 사상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터와 칼빈의 주장들은 모두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킴으로서 각자의 영역에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 옴으로써 발생했던 문제들을 방지할 필요를 느꼈으며 동시에 국가가 종교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교의 정치화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둘은 모두 정교분리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했던 정교분리 사상은 정치와 종교의 고유한 영역의 구분과 그로 인한 질서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은 현대적 의미의 정교분리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지극히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칼빈의 시도와 같이 한국 사회를 기독교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칼빈의 시도가 중세로부터 현대로 넘어서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터와 칼빈의 사상은 개인의 신앙적 사상적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의 사상에만 근거해서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정교분리란 단지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미국의 헌법에 포함된 정교분리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헌법에 포함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단순히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미국 헌법과 정교분리 원칙

1791년 12월 15일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정교분리의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송삼섭, 1997, p. 5). 그러나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은 앞서 살펴본 루터나 칼빈의 정교분리 주장과는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사회가 식민지 초기부터 수정헌법을 채택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신앙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어 있었다.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둘러싼 잔인한 전쟁뿐만 아니라 국교회와 청교도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왕정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이 개척한 미국 식민지의 경우는 영국 본토의 상황과 달랐다. 미국 식민지에는 국교회 신도와 청교도 신도들, 그리고 일부 로마 카톨릭 신도들과 그 밖의 몇몇 개신교 종파들까지,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이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한 마디로 미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식민지 개척 초기부터 다원화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는지 간에 그들에게 그들 각자의 종교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종교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식민지 지역의 공식 종교로 지정한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폴리머스에서는 청교도인들이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그곳의 공식적인 종교로 지정했다. 또 버지니아 지역에는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 성향의 국교도들이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를 자신들의 공식적인 종교로 지정했다. 그리고 1630년에는 청교도인들이 찰스 1세로부터 식민지 건설 허가를 받고 메사추세츠만 부근에 정착했는데, 이들 의회는 청교도 교회의 일원임을 조건으로 하는 자유민으로만 구성되었다(Paul Johnson, 2016, p. 59).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식 종교로 지정함으로써 미국 초기 식민지 사회는 각 주마다 공식적 종교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로저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청교도의 정책을 반대하다가 메사추세츠에서 추방되어 로드아일랜드 땅을 인디언들로부터 사들였고, 그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다(Francis Whitney, 2005, p. 21.). 이렇게 미 대륙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종교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든지 영국 정부로부터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미 대륙을 식민 개척할 당시에

정부 주관으로 하지 않고 민간 집단에 의해 추진하도록 했다(Francis Whitney, 2005, p. 1.). 영국 정부는 이렇게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게 특허권을 주고 그 특허권을 받은 회사가 이주할 사람과 자금을 모집해서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 국가가 수립되기 직전까지 북미대륙에 정착한 13개 주들은 각자 영국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가질 뿐 아니라 통치체제나 법률, 종교에 대한 규정들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조지형, 2012, p. 89). 그리고 각 주마다 주도적인 구성원들의 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영국만큼 엄격한 것은 아니었다. 버지니아주나 청교도들로 이루어진 폴리머스 역시 각각 자신들의 신앙을 식민도시의 공식 종교와 같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영국과 같이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행사하는 일은 없었다. 미국 식민지 사회들은 각기 그들의 법률은 달랐지만 그들이 겪어 왔던 영국 사회의 종교적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들을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로드아일랜드의 경우는 완전한 종교적 자유,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원칙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Paul Johnson, 2016, pp. 90-91.). 식민지 도시들의 종교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이후, 그들의 헌법 속에 권리 장전이라는 조항들로 표현되었다. 그 중에서 버지니아가 채택한 권리장전(Virginia Bill of Rights)의 경우를 보면 제16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종교, 달리 말해서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그 의무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오직 이성과 확신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며, 결코 강제나 폭력으로 해서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누릴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적 관용과 사랑,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호적 의무이다.

이 내용은 신앙에 대한 관용을 기초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버지니아의 권리장전이 의회에서 승인됨으로써 버지니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법적으로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송삼섭, 1997, p. 13.). 이후 1787년에는 미연방의 제헌 의회(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연방헌법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1791년 연방 의회에서 권리장전이라 불리게 되는 헌법 수정안 10개조가 통과되었는데, 이 수정안 제 1조는 종교의 자유와 국교 금지에 대한 연방 차원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미연방은 세계에게 가장 먼저 법률로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자유를 명시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 이후, 미국의 각 주들은 연방헌법에 따라 각 주들의 공식 종교 지정을 해지해 나갔으며, 최종적으로는 1833년에 매사추세츠가 회중교회에 대한 특권을 철폐함으로써 건국 당시 13개 주 모두 공식적 종교를 폐지하게 되었다(Sydney E. Ahlstrom, 1972, p. 38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담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이 채택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운 정교분리 원칙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이 개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자유에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헌법 1조는 권리 장전의 형식으로 먼저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수정 헌법 역시 권리 장전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미국에서의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의 법률은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국가가 종교적 내용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종교 선택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종교적 이유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루터와 칼빈의 사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칼빈과 루터,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은 모두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가가 종교적 영역에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루터, 칼빈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정교분리의 현대적 의미

존 롤스는 자신의 철학이 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다. 현대 미국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타협할 수 없는 종교적 관념들의 충돌이 발생하는 다원적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다원적 상황에서 어떻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롤스의 철학적 관심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롤스 사상의 기원은 종교개혁과 그 영향들이라고 말한다(John Rawls, 1998, p. xxx-xxxi). 롤스에 의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국가적 통합을 위하여 다원적 상황에 대해 불관용의 자세를 취해왔지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미 다원적 상황이 현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관용의 정신으로 다원주의를 용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스의 견해대로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리체계로 통일되어 있던 상황을 다양한 형태의 교리체계로 전개했다 할지라도, 루터나 칼빈이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신앙의 체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바꾸어 말해서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이 개인의 신앙적 자유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말이다. 루터와 칼빈의 정교분리 원칙도 마찬가지였다. 종교개혁가들의 정교분리 원칙은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교분리를 통해 교회의 부패와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수정헌법에 함의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의 생각과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정교분리 원칙 자체는 분명히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이 이어져 온 것이지만 그 의도는 관용의 정신으로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수정헌법에서의 정교분리 원칙의 의도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롤즈의 지적과 같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종교적 시민전쟁에 대한 대안으로 수용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John Rawls, 1998, p. xxiv). 그리고 이런 관용의 정신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롤즈에게로 이어진다. 롤즈가 다원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미국의 수정헌법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롤즈의 국가 중립성 주장은 이런 롤즈의 철학적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의 정교분리의 주장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 수정헌법으로 이어졌고, 미국 수정헌법의 정신은 다시 롤즈의 중립성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교분리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더 있다. 그것은 미국 사회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교분리를 주장했던 종교개혁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정교분리가 실현되기도 어려웠고, 그런 정교분리 정책이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미국 역시 연합국가를 이루기 이전에는 각 주마다 공식적인 종교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연합국가를 이루면서 국교를 헌법으로 금지시켰다. 헌법으로 국교를 금지했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쪽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막강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의해 국가는 종교를 떠나 세속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단순히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종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종교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장려함으로써 다른 종교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중립성 논의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우리 나라 현행 헌법 제 19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헌헌법에서는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고 표현되었던 것이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에서 수정된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헌법이 제정되던 당시 상황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이 상당히 의아한 점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에서도 종교가 정치와 연관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지만 서구의 경우처럼 종교가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헌법에 이 조항이 포함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그 견해들 중 한 가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고, 단지 역사적 의미로만 삽입었다는 것이다(이영록, 2012, p. 64.). 우리나라 역시 국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해석이 맞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 다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연

히 이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나학진, 1988, p. 199). 필자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한 견해라 본다. 다만, 미국 헌법의 영향으로 이 조항을 포함했을까라도 단순히 의미 없이 포함 시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이 정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1886년의 한불수호통상조약에 대해 최종고씨는 당시 고종의 법률고문으로 온 미국인 법률가 오웬 데니(Owen Denny)가 이 조약에 “쌍방국에 서로 교회(敎誨)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넣었다고 언급하는데, 이 표현은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최종고, 2014, p. 289). 그리고 제주교난(濟州敎難)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민 조약(敎民條約, 1901)과 선교조약(宣敎條約, 1904)이 체결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교조약(政敎條約)으로 로마 카톨릭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한다(최종고, 2014, p. 290). 이렇게 조선시대에 새로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자유가 문제시 되었다는 것은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조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시기가 아직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기 이전이었지만 미국 수정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권리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 역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거나 부양함으로써 다른 종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 중립성의 논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루터와 칼빈의 논리로만 정교분리 원칙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정교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 당연히 교회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고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완전히 분리되어 탈정치화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교회가 정치적 참여로 인하여 자기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자기반성의 차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지,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정엽의 한 논문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두고 “종교인의 모든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에게든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성정엽, 2020, p. 18). 김상겸의 한 논문에서도 “모든 이익단체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가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히다. 다만 이것은 종교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권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 한다(김상겸, 2006, p. 146.). 물론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본래적 설립의도를 해치지 않으려면 자발적

인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글을 마치면서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미국 수정 헌법 1조의 내용은 개인의 측면에서는 신앙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를 포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측면에서는 신앙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금지는 무엇이 종교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국가가 종교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 하여금 종교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국가가 특정한 종교에 대해 더 우호적인 지원을 한다면 그 또한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헌법 1조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 단체의 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최종고, 1983, p. 30). 즉, 국가가 개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특정 종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헌법에 대한 이런 해석은 사실상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특히 롤즈가 제시하는 중립성의 내용은 국가가 어떤 특정한 포괄적 교설들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려 하거나 장려하려 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 큰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롤즈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공동체의 결의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중립성의 논의 자체가 권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의 내용도 단지 정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식으로만 해석되어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헌법에 명시된 문구를 수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국가 중립성 주장에 의거해서 해석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적 의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선의 관념에 대해서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적 일에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정치적 일에 침묵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해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롤즈 역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합의의 상황에서는 대표자들의 선 관념을 무지의 베일에 가려지게 했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현안들에서조차 선 관념들의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 역시 정교분리에 대한 생각들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이나 교회 역시 정교분리에 대한 관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칼빈이나 루터나 칼빈이 정교분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교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은 중세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자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이 주장대로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한다면, 오늘날 다원화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자세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발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가 정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세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당연히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의미를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교회 역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완전히 몰두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정치적인 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갈 수도 없다.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왕국에 몸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가 말한 것처럼 천국의 일은 교회가 그리고 세상의 일은 국가가 한다는 식의 두 왕국설을 따르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되었다. 루터의 시대는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현실과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중적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루터는 두 왕국설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는 곧 국민’이라는 이념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국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해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교회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완전히 탈정치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 문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세로 숙의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Ahlstrom, Sydney E. (1972).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attles, Ford Lewis.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Dillenberger, John.(1961).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 Hagen, Kenneth. (1998). Luther's Doctrine of Two Kingdoms, *A Quarterly Journal for Church Leadership*, 7(4), 103-127.
- Kimlicka, Will. (1988). Rawls on Teleology and Deontology, *Philosophy & Public Affairs*, 17(3), 173-190.
- Nagel, Thomas. (1973). Rawls on Justice, *Philosophical Review*, 82(2), 220-234.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Bost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1975). Fairness to Goodness, *Philosophical Review*, 84(4), 536-554.
- Rawls, John. (1998).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ndel, Michael J.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ckness, Brent W. (1992). Luther's Two Kingdoms Revisited : A Response to Reinhold Niebuhr's Criticism of Luther,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0(1), Blackwell Publishing Ltd, 1992, pp. 93-110.
- 김기련 (2008).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국가 이해. **신학과 현장**, 18(1), 대전: 목원대학교 신학연구소, 49-70.
- [Kim, G. L. (2008).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s View of the State. *Theology and Context*. 18(1). Daejeon: Mokwon University Theological Research Institute, 49-70.]
- 김상겸 (2006).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5(2), 서울: 한국공법학회, 131-159.
- [Kim, S. K. (2006). A Study o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Public Law*. 35(2), Seoul: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131-159.]
- 나학진 (1988). 정교분리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국가와 교회**,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서울: 179-206.
- [Rah, H. J. (1988). Theological Investigation on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State and Church*, Seoul: Korea Christian Culture Promotion Agency, 179-206.]
- 박홍식 (2017). **미완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 서울: 21세기 북스.

-
- [Park, H. S. (2017). *Martin Luther, the Unfinished Reformer*. Seoul: 21c books.]
- 성정엽 (2020).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의 의미, **법학논고**, 70, 대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26.
- [Sung, J. Y. (2020). The Meaning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Law Journal*. 70, Dae 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26.]
- 송삼섭 (1997). 토마스 제퍼슨과 종교. **미국사연구**, 5, 서울: 한국미국사학회. 1-25.
- [Song, S. S. (1997). Thomas Jefferson and Religion.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5, Seoul: The Korean Society Of American History. 1-25.]
- 이영록 (2012). 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법철학연구**, 15(2), 인천: 한국법철학회, 51-80.
- [Lee, Y. L. (2012). Thoughts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Birth of Religion Clause in Korea,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15(2), Incheon: Korea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 51-80.]
- 정중훈 (2002),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일 개신교회의 정치윤리와 정치참여. **한국 교회와 정치윤리**, 서울: SFC. 19-44.
- [Jeong, J. H. (2002). Political Ethic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German Protestant Church aiming for democracy. *Korean Church and Political Ethics*, Seoul: SFC. 19-44.]
- 조지형 (2012). **미국헌법의 탄생**, 파주: 서해문집.
- [Jo, J. H. (2012). *The Birth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Paju: Seohaemunjip.]
- 최종고 (1983). **국가와 종교**, 서울: 현대사상사.
- [Choi, J. G. (1983). *State and Religion*. Seoul: Hundesasangsa.]
- 최종고 (2014). 한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신학과 교회**, 2, 서울: 헤암신학연구소, 285-312.
- [Choi, C. K. (2014). State and Church in Korea, *Theology and Church*. 2, Seoul: Hyeam Institute of Theology, 285-312.]
- 명병훈 역. (2016). **미국인의 역사**, Johnson, Paul.(1997). A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서울: 살림.
- [Myeong, B. H. (2016). A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Seoul: Salim. Trans. Johnson, Paul.(1997). *A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Great Britain: Weidenfeld & Nicolson.]
- 김해성·조영달 역. (2009).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Mulhall, Stephen. and Swif, Adam.(1996). Liberals and Communitarians. 파주: 한울.
- [Kim, H. S. & Cho, Y. D. (2009). Liberals and Communitarians. Paju: Hanul. Trans. Mulhall, Stephen. and Swif, Adam.(1996).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안규남 역. (2012). **민주주의의 불만**, Sandel, Michael J.(1996), Democracy's Discontent, 파주: 동녘.
- [An, G. N. (2012). Democracy's Discontent. Paju: Dongnyok. Trans. Sandel, Michael J.(1996), *Democracy's Discontent*. Cambridge: Belknap Press.]

안진환·김선욱 역 (2015). **왜 도덕인가**, Sandel, Michael J. (2005), *Public Philosophy*, 서울: 미래엔.

[An, J. W. & Kim, J U. (2015), *Public Philosophy*. Seoul: Miren. Trans. Sandel, Michael J. (2005), *Public Philosophy*. Harvard Univ Press.

휴먼앤북스 편집부 역 (2005). **미국의 역사**, Whitney, Francis 외, *Outline of American History*, 서울: 휴먼앤북스.

[Human and Books. (2005), *Outline of American History*, Seoul: Human and Books. Trans. Whitney, Francis. (1969), *Outline of American History*.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칼빈주의 연구원 역. (1986). 칼빈과 시민정부. McNeill, John T. *On God and Political Duty*.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279-298.

[Calvinist Researcher. (1986). *On God and Political Duty* Seoul: Christian Cultural Association. McNeill, John T. *On God and Political Duty*.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vii-xxv.]

국가 중립성 논의와 정교분리*

Debates on State Neutrality an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서윤 발 (부산대학교)

논문초록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중립성 논의는 국가가 종교적 도덕적 관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런 국가 중립성 주장이 개인주의적인 발상이며 공동체의 연대감과 자치 역량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도덕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롤즈는 샌델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국가 중립성 모델을 목적의 중립성으로 소개했다. 이와 같이 국가 중립성에 대한 롤즈와 샌델의 주장은 완전히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중립성에 대한 이들의 대립된 주장에는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문제이다. 롤즈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국가 중립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샌델은 공동체에 의해 그런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국가 중립성을 반대한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에 따른 국가 중립성 논의는 이미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함의되어 있던 것이다. 근대 이후의 정교분리 입장의 기초가 된 종교개혁가들의 사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정교분리란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 헌법 수립의 배경을 통해 볼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권리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은 롤즈와 샌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 종교개혁가들의 정교분리 사상, 그리고 미국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권리 문제가 이런 일련의 논의들에서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국가 중립성, 개인의 권리, 정교분리 원칙, 헌법, 신앙의 자유